

## 금융지원

## 금융

## 긴급경영안정자금

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

신청시기 : 연중수시    지원대상 : 중소기업

전담기관 : 중소기업진흥공단

## I. 긴급경영안정자금(재해중소기업지원)

## ■ 지원대상

- 「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(중소벤처기업부 고시)」에 따라 ‘자연재난’ 및 ‘사회재난’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

※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·면·동장이 발급한 「재해중소기업 확인증」 제출

## ■ 지원규모

구분	용자 조건
용자방식	직접대출
대출한도	(직접대출, 운전)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(3년간 15억원 이내)
대출기간	(직접대출, 운전) 5년 이내 (거치기간 : 2년 이내)
대출금리	(직접대출, 운전) 1.9%(고정)
기 타	운전자금의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

## II. 긴급경영안정자금(일시적경영애로)

## ■ 지원대상

- 다음 ‘① 경영애로 사유’로 인해 일정부분 이상 피해(‘② 경영애로 규모’)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

## ① 경영애로 사유

- 환율피해
  - 대형사고
  - 대기업 구조조정
  -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(조선, 자동차, 해운, 철강, 석유화학) 관련 피해
  - 주거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
  - 기술유출 피해
  -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
  - 한·중 FTA 지원업종(피해)
  -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
  - 화학안전 법령 이행
  - 코로나19 피해
  -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
  -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
  -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
  - 원전 협력 중소기업(단,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용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)
  -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
  -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
  - 기타 중소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
- ※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

② 경영으로 규모: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%이상 감소 기업, 대형사고(화재 등)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

(비교시점)

연도: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,

반기: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,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,

분기: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,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,

월별: 신청전월과 전전월, 신청전월과 전년동월

※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,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,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,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, 원전 협력 중소기업, 기술침해 피해기업 규모 요건 적용 예외

## ■ 지원규모

구분	용자 조건
용자방식	직접대출
대출한도	(직접대출, 운전) 10억원 이내 (3년간 15억원 이내)
대출기간	(직접대출, 운전) 5년 이내 (거치기간 : 2년 이내)
대출금리	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+ 0.5%p
기 타	운전자금의 용도는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

## ■ 문의처

-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☎ (국번없이) 1357)
- 정책자금 안내콜센터 (☎ 1811-3655)

## 금융지원

### 금융

## 신성장기반자금

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, 고부가 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

신청시기 : 연중수시    지원대상 : 중소기업

전담기관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## ■ 지원대상

### ▪ (혁신성장지원)

-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
- ※ (이자보전) 최근 3년 이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
- 혁신성장지원자금 內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

- ①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
- ② 2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

※ 협동화사업 우대 사항

- 업력 제한 없음
- '용자제외 대상업종' 中 산업단체(KSIC 94110)는 지원 대상에 포함

- (스케일업금융)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
- (Net-Zero 유망기업 지원)
  -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, 저탄소·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